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14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미래전략본부) 02-970-6074

제정 2017. 12. 7.

개정 2019. 10. 16.

개정 2021. 1. 8.

개정 2022. 10. 7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, 성과 평가, 개선조치 등 대학발전계획 환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대학발전계획"이라 함은 대학의 사명, 비전, 교육목표, 인재상, 핵심역량 등 대학의 기본적인 운영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활동계획을 말하며, 특성화계획을 포함한다.
- 2. "성과평가"라 함은 대학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추진전략별 세부과제에 대

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· 분석 ·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2장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

제3조(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) 대학발전계획의 수립, 추진, 성과평가, 개선조치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 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의 역할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2. 대학발전계획 추진 실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3. 대학발전계획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SDGs(지속가능발전목표) 실현을 위한 ESG(환경, 사회,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) 활동 등 기타 대학발전계획과 관련된 사항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연구기획부총장이 되고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미래전략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임명 및 위촉하고, 단과대학별 교원대표 각 1명, 대학원 교원대표 1명, 직원대표 1명, 학생대표 1명, 동문대표 1명, 외부위원 1명 등으로 구성한다.
 -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등을 수행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관리주체 및 역할

- 제8조(주관부서) ① 대학발전계획의 수립, 추진, 평가 등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미래전략본부로 한다.
 - ② 주관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대학발전계획 수립, 추진, 조정 및 운영 총괄
 - 2. 대학발전계획 추진 실적 성과평가 및 결과 보고
 - 3. 대학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연계 관리
- 제9조(실행부서) ① 대학발전계획의 세부 실행 과제를 추진하는 부서를 실행부서 라고 한다.
 - ② 실행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실행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
 - 2.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설정·관리
 - 3. 실행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추진 성과 보고
 - 4. 실행과제별 예산 집행 및 결산

제4장 수립 및 추진

- 제10조(대학발전계획 수립) ① 대학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.
 - 1. 내 · 외부 환경 분석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된 대학 비전, 교육

목표, 인재상 및 핵심역량 등 대학 운영 이념

- 2. 대학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, 전략과제, 실행과제
- 3. 실행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지표
- 4. 특성화계획
- 5. SDGs 실현을 위한 ESG 활동
- 6. 기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
- 제11조(대학발전계획 수립 절차) ① 대학발전계획은 미래전략본부에서 입안하여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.
 - ② 대학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제12조(대학발전계획 추진) ① 각 실행부서는 대학발전계획의 실행과제에 따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목표값을 설정하고, 세부과제를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는 대학발전계획의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예산과의 연계) 주관부서는 대학발전계획과 중기재정운용계획, 예산 편성 및 결산을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장 성과관리 및 환류

- 제14조(성과관리) ① 주관부서는 대학발전계획의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와 관련 된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목표값을 각 실행부서와 협의하여 설정하고, 위원회 에서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.
- ② 대학발전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제15조(방법 및 절차) ① 주관부서는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- ② 실행부서는 성과지표 달성도를 포함한 추진 실적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.
- ③ 주관부서는 실행과제별로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한다.
- ④ 위원회는 추진 실적 성과를 평가 및 심의한다.
- ⑤ 주관부서는 성과평가 심의 결과를 분석·정리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결과 활용) ① 실행부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연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, 교육여건 개선, 대학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17조(대학발전계획 개선 및 조정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발전계획을 개선 및 조정할 수 있다.
 - 1. 대학발전계획 추진 실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·조정이 필요한 경우
 - 2. 학내 · 외 교육환경의 변화로 개선 · 조정이 필요한 경우
 - 3. 그 외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대학발전계획 개선 및 조정 시에는 성과평가 결과, 대학자체평가 결과, 교육 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, 구성원의 의견, 대내·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(제416호, 2017. 12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496호, 2019. 10. 1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576호, 2021. 1. 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714호, 2022. 10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